

제428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6일(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증인 고발의 건
-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법무부 소관
 - 법제처 소관
 - 감사원 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현법재판소 소관
 - 대법원 소관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법무부 소관
 - 대법원 소관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8)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0)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2)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2)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3)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5)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7)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1)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6)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4)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2)
3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3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3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4)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2)
3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2)
3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3)
3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1)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3)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9)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9)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5)
4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7)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9)
4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1)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5)
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4)
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2)
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3)
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4)
5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3)
5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3)
5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2)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0)
5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7)
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1)
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5)
5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3)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3)
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6)
6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1)
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9)
64.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추가)
6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추가)
6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추가)
6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추가)
6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추가)

상정된 안건

1. 증인 고발의 건 11
2.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
64.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9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8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8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8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8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34
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34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34
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34
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34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34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34
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34
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16.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35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현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1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35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44
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45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8)	45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0)	45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2)	45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2)	45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3)	45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5)	45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7)	45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1)	45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6)	45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4)	45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2)	45
3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45
3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45
3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45
3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45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45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4)	45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2) ..	45
3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2)	45
3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3)	45
3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1)	45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3)	45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9)	45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9)	46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5)	46
4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7)	46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9)	46
4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1)	46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5)	46
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4)	46
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2)	46

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3)	46
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4)	46
5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3)	46
5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3)	46
5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2)	46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0)	46
5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7)	46
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1)	46
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5)	46
5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3)	46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3)	46
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6)	46
6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1)	46
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9)	46
6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46
6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46
6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46
6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46

(15시17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또 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 내고 더 빠르게 법치를 확립하고 지켜내는 일이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사법 개혁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돼 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일단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추미애** 예, 그러시지요.

송석준 위원님이시지요?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 주지 마세요.

(웃음소리)

○**위원장 추미애**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시고 잘못 교육을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데.

○**위원장 추미애**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많이 안 줘서 법사위가 굉장히 험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위원장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운영하셨는데 또 참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사고를 치셔 가지고 이 법사위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이렇게 경륜이 있는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법사위를 이제는 잘, 그동안의 나빴던 관행을 일소하고 여야 간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위원장님, 혹시 이 사진 보셨지요? 이게 아마 위원장님실에서 제공한 사진 같은데요.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과…… 멋진해병 단톡방 멤버 송호종 씨의 휴대폰에서 입수한 사진으로 이게 아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글쎄 이것에 대해서 또 당사자인 이관형 씨가 고발을 한 것 아시지요, 추미애 위원장님을 상대로? 이게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실에서 구명 로비 폭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과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특검이 지난달 확보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하셔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정보인데 이것은 특검법에도 21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 그 누구도 수사기간 중에 기간연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소제기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대국민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병 출신 이관형 이분이 추미애 위원장님과 또 특검을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래서 오늘 사실 첫 초면에 저도 부드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보도가 되고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과연 법사위원회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보시

지요.

○**위원장 추미애** 아주 부드럽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한 것은 이따가 의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각 당이 대표해서 한 분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 원래 간사가 해야 되는데 송석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한 분 하시고……

○**위원장 추미애** 아까 간사에 대해서 흥미를 안 느끼시는 것 같아서……

○**박형수 위원** 아니, 그래도 간사 역할은 해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아니, 곧 떠날 것처럼 또 말씀을 하셔서 송석준 위원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이쪽 한 분 하시고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추미애 대표님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네요. 첫 회의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은 임기가 5년이었는데 3년밖에 못 했지요. 그리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가고 부인이 감옥에 갈 때 그 시작이 바로 채 해병 순직 사건입니다. 채 해병이 순직될 때 임성근이 사단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단장이 가슴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인간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 나와서 온갖 위증을 해 댔는데 그 위증의 아주 중요한 자료들도 나오고 지금 이 모든 것은 곳곳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하기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곳곳에서 받은 제보들 저희들은 다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받은 제보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송석준 위원도 이와 관련한 내밀한 것들을 내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는 다 내놓고 이제 죄악·범죄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개혁해 내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과거 정청래 위원장이 하실 때의 법사위를 한번 더 보좌진들에게 잘 얘기 들으시고 필요 없는 내용보다는 알차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그동안 위증해 왔던 자들은 이 국회 까지 와서 위증해서, 그 임성근이 위증하고 이종섭이 위증해서 윤석열이 꺼꾸러진 것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전화 과정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이곳에서 자료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절도 있게 잘해 주신다면 법사위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그런 의사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당의 의사진행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안 줍니까?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네. 말 잘 듣는데요, 말씀.

○위원장 추미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간사님 의견은 한번 들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오늘 회의는 먼저 중인 고발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고유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및 고유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다음……

○신동욱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중간에 현안 시간에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제가 말씀, 각……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무슨 현안질의를 얘기합니까, 지금?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서 받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의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또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오시자마자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서영교 위원 의사진행하는 거지, 오시자마자 왜 방해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추미애 제가 인사말씀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법사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신동욱 위원 국민들께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아직 회의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된 안건이잖아요, 지금.

○신동욱 위원 위원장이 무슨 상전입니까?

○박준태 위원 협의도 안 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옮겨 놓고서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아니,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이 무슨 상전입니까?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위원장이 의사진행 못 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신동욱 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방해했습니까? 한 명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는데 그걸 못 줘요?

- 김기표 위원** 위원장이 적정하게 의사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안 주니까 그런 거지요.
- 서영교 위원** 아니, 첫 진행도 못 하게 막는 이유가 뭐예요?
- 신동욱 위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 송석준 위원** 오늘 위원장님 첫날이시니까 발언 기회를 부드럽게 한번 줘 보세요. 뭘 그렇게……
-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박형수 위원** 아니, 간사하고 언제 상의했습니까? 간사는 여당 간사만 간사예요? 야당 간사는 간사 아닙니까?
- 박준태 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간사 협의된 것 맞아요?
- 곽규택 위원** 간사하고 언제 협의했어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협의된 것 맞습니까? 앞에 발언하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박은정 위원** 지금 법 따라 진행하잖아요.
- 박형수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 박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 박형수 위원** 아니, 언제 협의했어요?
- 신동욱 위원** 여기가 국회가 맞습니까, 지금? 국회가 이렇게 해요?
- 박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 신동욱 위원** 협의가 안 됐다잖아요, 간사 간에.
- 곽규택 위원** 의사일정 협의한 적도 없어요!
- 위원장 추미애** 자, 들어 보세요.
-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추미애** 이에 대해 양 간사 위원께서 지금부터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 협의할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까?
- 위원장 추미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협의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 쉬고 협의할 시간을 갖고 하시지요.
- 신동욱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곽규택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의사일정 정하고 안건 정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중간중간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시간 동안 두 분 간사께서는 별도로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협의 후에 안건을 올려야지요.

○**박형수 위원** 지금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추미애**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1. 증인 고발의 건

(15시31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증 등을 한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송호종과 이관형에 대한 고발의뢰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고발 의뢰 자료에 의하면 이관형은 해병대 출신들의 단체대화방에서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가 발언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과 관련하여 그것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삼부는 골프의 3부를 의미한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송호종, 최택용에게 이러한 취지로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사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관형은 직접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고 선서한 증인은 아니지만 장막 뒤에 숨어 증인들의 위증 행위를 사주·조종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별검사로부터 송호종뿐만 아니라 이관형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의결로써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송호종, 이관형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서 위증 등을 한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이 법사위원회로 와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송석준 위원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되자 추미애 위원장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바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

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 장악하면 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법에는 49조에서 분명히 의사일정, 안건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언제 야당 간사인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님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인 고발 안건도 누구를 고발한다는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든 여당 간사든 야당 위원 또는 야당 간사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니, 국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중인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어도……

이 모든 회의 과정의 시작은 민주당이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로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인 고발 건부터 오늘 안건 전체가……

지금 뒤에 미상정 고유법안 중에서 특검법안들 여러 건을 오늘 상정했어요. 이 특검법안들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다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모든 법안을, 특히 이 특검법안도…… 특검법안은 애초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제도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한 내에 다 수사를 하지 못하면 그 수사자료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다 특검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의 기간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것은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장하고 싶겠지만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설적인 특검 할 수 있어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것입니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의사진행에 관한 위원장님의 처사와 여당 위원들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의사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중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아마 의사일정 관련해서도 의사진행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한 당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요. 그게 최근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그게 관행으로 굳어진 것도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관행이고 협치 의사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얘기だ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협치 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해야 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야당은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 타협하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당 전당대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 내란당 됐습니다. 전한길이라는 극우적 인사가 이끌어 가는 그 주장을 답습하는 당대표가 지금 선출돼서 내란의 강을 건넌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지금도 내란 얘기하면 야유부터 하고 화부터 내시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협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에게 총부리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아, 고발부터 먼저 얘기하면, 1년 전에 위증했던 것 왜 이제 하느냐?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1년 전에 한 위증이 이제서야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범죄사실을 확인했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고발의 결이 있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숙려기간도 말씀하셨서 짧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당연히 특검 출범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특검법 처음에 만들었고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을지 몰랐습니다. 물론 의심은 했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해 보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런 정부를 운영했던 야당에서 반성하고 먼저 ‘특검법 개정해서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리하고 가자. 우리도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우선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동혁 전 법사위원께서 국민의힘 당대표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것 왜 위증 고발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여기 나왔던 증인들 줄줄이 위증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고발 취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위증이냐 하면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그때 와서 전부 다 줄줄이 위증하더니 특검 가서는 또 줄줄이 자백했어요.

김계환, 제가 ‘격노 얘기한 적 있나, 없나?’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특검 가 가지고는 격노 얘기했습니다.

송호종, 작년 10월 14일이었지요, 제가 여기서 ‘김건희, 윤석열 얘기 이종호가 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호 구속됐어요. 여기 그 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채 해병 특검, 채 해병 순직사 외압 수사를 막은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위원들 아닙니까? 19살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와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죽음에, 순직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것을 입법청문회 하는데 증인들이 와서 위증 다 하는데, 그것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위증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1년 지나서 왜 고발하느냐고요? 그때 당시에 위증 다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줄줄이 다 자백하는 거예요.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위증을 고발을 안 합니까? 위증이 다 드러났는데, 자기들 입으로도 위증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고발 안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회가? 국회가 범죄 비호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말씀 좀 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위증이 드러났으면 고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뒤에서 또 위증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건 교사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계속하실 건가요? 법사위 회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따가 또 줄줄이 나가실 거지요?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회의 줄줄이 지연시키고 더 이상 토론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본인들 얘기 제대로 뭐가 얘기 안 되면 또 줄줄이 다 나가실 것 아니에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맨날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전략을 잘 짜고 나오세요, 전략을.

법사위원회에서 이 위증에 대해서,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22대 대한민국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증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토론 종결 또 도돌이표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그런 것 하지 말고 토론 좀 합시다.

○**송석준 위원** 새 위원장님 오셨으면 기존 레퍼토리는 바꿔 봅시다. 맨날 같은 레퍼토리야, 맨날.

○**위원장 추미애**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에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5시51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2항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의사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첫 항이 증인 고발의 건입니다. 증인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 여야가 같이 고발할 대상자들을 놓고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꽁꽁 숨기고 있다가 회의 날 점심때 다 돼 가지고, 저는 들어올 때까지 명단 받지도 못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 미숙이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항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인데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있는 구치소 가서 CCTV 같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협의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상정하신 겁니다.

3항부터 15항이 미상정 타위법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항이 작년에 법무부 소관 예산들,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결산 토론입니다. 1년 동안 썼던 예산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제18항부터 제63항까지 미상정 고유법안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법사위가 관리하고 있는 법사위 산하의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개 특검에 대한 개정안들을 여러 건 같이 끼워 가지고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법들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회의 시작 전부터 숙려기간이 미경과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지요. 이러한 안건들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려서 몇 시간 만에 토론해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이제 여당이 되셨으니까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더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항의를 하면 ‘너네 내란 정당인데 어떻게 협의를 해, 협의 대상이 아닌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국민 평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치소 CCTV 보자는 거요 저는 반대합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된 상황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다수의 말씀으로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또 ‘구치소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CCTV 공개가 과연 어떤 국가적·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모두 다 그 안의 CCTV를 공개하겠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권침해적인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이화영 CCTV 그것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구치소 가서 현장검증하자는 것 반대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거에 특검법안을 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또 개정해 가지고 입맛에 맞게 수사를 더하도록 하겠다,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것 지금 일종의 정치 폭력입니다.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상식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나 행위는 그만큼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우리가 한일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 후,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야당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전념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의 내란 연장입니다. 연속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대표가 되면 한동훈은 공천 안 주고 전한길을 공천 준다? 이게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 미국 가서, 이재명 대통령은 7개의 전쟁을 종식시킨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면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하는데, 전한길은 미국 갔어요. 트러블 메이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에서 그러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그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법은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도 토론……

○위원장 추미애 각 당의 한 분씩만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래도 저는 아까부터 손을 들었고요.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5인 중에 찬성 10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김용민 위원 협의를 했지만 합의는 안 됐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02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77조 및 제

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64항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64.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정말 위원장님의 바뀌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추 위원장님은 역대 다른 법사위원장에 비해서 선수나 여러 경륜에서 남다른 면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곡됐던 법사위의 모습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으로 사실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게, 법사위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더 망가지고 있다. 지난 정부 많이 탓하면서 심한 말을, 무지막지한 말을 여기서 쏟아 내면서…… 새 정부가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 했더니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보세요. 첫째 안건 중인 고발의 건 이런 것은 분명히 여야가 항상 국감이 끝나고 나면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고발 대상을 정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또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인격과 또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꼭 해야 될 그런 아주 핵심 인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인데 그걸 무시하고 오늘 전혀 합의도 없고, 오늘 보니까 회의 직전에 명단이 그냥 획 날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까지 깨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발 명단을 보니까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수사 중인 분들이에요. 지금 특검 대상으로 이미 조사받고 하는 분들인데 군이 이렇게 이중 삼중 고발을 안 해도 정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으실 분들은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얻고 꼭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 법사위의 고발을 통해서…… 한번 조사·수사해 보고 또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분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법사위가 그냥 온 국민들 조금만 관련되면 출줄이 책 한 권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또 법사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법사위야말로 바로 국민들의 생명, 재산권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권리, 인격권을 존중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법치주의

를 지켜야 될 법사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1호 안건을 터무니없이, 여야가 전혀 합의도 안 된 안건을 그냥 밀어붙이기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좀 더 세련되고 성숙된 모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임 위원장들의 아주 잘못되고 나쁜 관행대로 중간에 그냥 잘라서 토론 종결시키고 또 숫자놀이로 표결로 밀어붙이고, 이것 반복하면 도대체 법사위가 계속 이렇게 막가자는 겁니까?

제발 경륜 있는 법사위원회께서 잘못된 우리 법사위의 관행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간곡히 드립니다.

또 2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알려졌어요.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법질서가 저 정도인가, 저렇게 국격이 없는가, 저렇게 직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장에서도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 정말 이상하다. 할 짓 못 할 짓 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발 1호 안건, 2호 안건 이런 것은 좀 자제하시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운영해주시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쭤봤던 것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고발당하셨잖아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법사위원회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게 제대로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송석준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은 의사진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아까 이 고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특별검사로부터 이렇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도 같이 보내왔어요?

○위원장 추미애 예, 같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같이 보내왔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과 꽈규택 위원님이 이 증인들을 불러서 일문일답을 할 때 다 위증을 한 것이고요. 송호종 증인이 위증을 하기 전에 이관형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동욱 위원 국회가 특검의 사주를 받고 고발합니까?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주진우 위원 수사 결과 나왔습니까?

○박준태 위원 그 자료가 무슨 자료예요, 위원장님? 저희한테는 공유가 안 되는 자료입니다?

- 신동욱 위원** 아니, 특검이 뭔 자료를 보냈는지 저희한테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가 특검의 무슨 하부기관입니까, 지금?
- 전현희 위원** 수사기관에서 위증 고발 요청을 하는 게 통상적 절차예요.
- 박준태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펼쳐 놓고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송석준 위원** 여야 위원들 공유를 해 주셔야지요.
- 신동욱 위원** 공유를 해야지요, 왔으면. 못 봤다니까요?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만 갖고 계시니까……
- 신동욱 위원** 우리는 그것을 못 봤다니까요?
- 위원장 추미애** 이것은 국회……
-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온 명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본인만 보고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 송석준 위원** 그럼요. 우리도 같이 팩트를 알고 그래야 공감하고 동의해 주잖아요.
- 신동욱 위원** 그럴 만하면 하자고요. 그런데 왜 안 보여 주시냐고요.
- 위원장 추미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정확한 걸 알면 저희들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추미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보여 주세요, 먼저.
- 송석준 위원** 그것 보여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진작 보여 주셨어야지요.
- 주진우 위원** 미리 했어야지요.
- 위원장 추미애** 회의가 열려야 보여 드리는 거지요.
- 신동욱 위원** 특검이 고발해 달라 그러면 다 고발합니까, 우리가?
- 주진우 위원** 협의 단계에서 미리 보여 줬어야지요.
- 박준태 위원** 아니, 그게 누구한테 온 겁니까, 위원장님? 법사위로 온 겁니까, 국회의장한테 온 겁니까? 밝혀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우리도 잘못된 사람 있으면 고발할 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회의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서 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 송석준 위원** 그런데 안 보여 주셨잖아요.
- 신동욱 위원** 그 문서도 지금 보여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 박준태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 신동욱 위원**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냐고요.
- 주진우 위원** 자료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 박은정 위원** 발언권 좀 얻고 발언하세요.
- 이성윤 위원** 회의 좀 진행하게 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 신동욱 위원** 지금 우리한테 자료가 없잖아요.
-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라고요.
- 신동욱 위원** 발언권 안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을 안 주잖아요.
- 박은정 위원** 왜 안 줘요, 발언권 주시는데.
-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게 돼 벼렸습니다.
- 주진우 위원** 그게 무슨 이해관계인데요? 무슨 자료인데요?
-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법사위에서는 고발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 박준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토론을 하자고요.
- 송석준 위원** 우리도 보여 줘야지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이것을.
- 위원장 추미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 신동욱 위원** 아니, 왜 본인만, 혼자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 송석준 위원** 아니, 친절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절차를 위반한 거잖아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 장경태 위원** 아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 신동욱 위원** 자료를 왜 숨겨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자고요.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 신동욱 위원** 자료를 왜 숨겨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도 드렸기 때문에……
- 신동욱 위원** 자료를 숨기면 안 되지요. 무슨 답변을 줍니까?
- 위원장 추미애** 이쪽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법사위에 오시기 전에 저희가 채 해병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제가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아서 이미 여러 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가 이종호 보고 오빠라고 부른다’ 또 ‘삼부가 골프장 3부가 아니라 삼부토건과 관련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연말에 송호중과 임성근 만난 적 있다’라고 했더니 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증이었던 겁니다. 다 제보받아 가지고 다 사실관계 확인돼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 신동욱 위원**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니까요!
- 장경태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 신동욱 위원** 못 들었으니까 공유하라고요, 그러니까.
- 장경태 위원** 조용히 하세요!

- 신동욱 위원 공유하라니까요!
- 장경태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 신동욱 위원 못 들었다고, 나는!
- 장경태 위원 발언 기회 신청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아는 척 하세요?
모르시잖아요!
- 신동욱 위원 뭘 다 들어요?
- 장경태 위원 청문회 하셨어요? 해 보셨냐고요.
- 신동욱 위원 뭘 다 듣냐고요.
- 장경태 위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 신동욱 위원 뭘 다 듣냐고요.
- 장경태 위원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고발당해서 경찰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도 다 제출했고. 고발 한번 당해 보세요, 나가셔서.

-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여 주라니까요, 자료를.
-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나가셔서 기자회견장 가서 하시라고요! 조용하시고.
- 신동욱 위원 자료를 안 보여 준다니까요, 지금. 왜 숨깁니까?
- 장경태 위원 그래서 ‘이종호를 오빠라 부른다’, ‘삼부토건이 골프장 3부 골프 아니었다’, ‘연말에 송호종, 임성근 만났다’, 제가 다 폭로했습니다. 이것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진도 공개됐고. 그래서 저는 경찰서, 서울경찰청, 중앙지검까지 가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다 났고요.

그래서 여기 증언 보면 ‘수사 지침받은 적 없다’, 김동혁 군검찰단장도 허위였고요. 송호종 증인, ‘삼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했을 때 ‘3부 골프’라고 했고. 그런데 여수 화양 프로젝트인 것 다 확인됐고요. ‘7·8월에 통화한 적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증언했었습니다. 또 ‘이종호가 VIP,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한 적 있느냐?’라는 질의에 송호종은 ‘없다’고 증언도 했어요. 다 있었습니다. 저도 제보받아서 그 녹취파일 다 수사기관에 제출했고요.

여러 가지 정말 뻔뻔하게 법사위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했던 멋쟁해병 5인과 해당 위증을 한 사람들을,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했는데 이걸 사진 한 장을 공유 안 했다고 지금 고발 요건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황당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 송석준 위원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모든 자료잖아요. 공유해야지, 당연히.
-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위증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사법기관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제가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전 고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요!

- 신동욱 위원 위원회 명의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 명의로.
- 장경태 위원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 신동욱 위원 그러면 혼자 하세요, 고발을.
- 주진우 위원 본인 개인이 고발하세요.
- 장경태 위원 위원회에 와서 위증했지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증했습니까? 위원회에

와서 위증한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 와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저랑 거짓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강력하게 건의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결했잖아요, 이미.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토론을……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것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64항은 토론도 안 했어요, 아직.

○신동욱 위원 발언 기회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박준태 위원 64항에 대한 토론 안 했어요. 종결 요청할 동의가 지금 성립할 수가 없어요. 양당의 한 명씩은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신동욱 위원 64항 토론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추미애 이미 제가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각 당에.

○박준태 위원 아니, 우리 당은 토론 안 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 안 했다니까요, 64항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했지 토론은 안 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회의록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64항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아니, 송석준 위원님하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셨잖아요.

○박준태 위원 송석준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았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장경태 위원님 각 한 분이 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언제 했어요, 64항에 대해서? 소위 인원 늘리는 것 가지고 언제 토론했나고요.

○이성윤 위원 토론했어요.

○곽규택 위원 토론하게 해 봐요, 내가 그 얘기 할 테니까.

○신동욱 위원 64항에 대해서 토론이 없었어요. 소위 구성에 대한 토론이 없었어요.

○곽규택 위원 없었잖아요, 지금. 회의록 봐도 전혀 그 말이 없구먼. 안건에도 없는 법을 놓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현희 위원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발언해야 되는데.

○이성윤 위원 엉뚱한 얘기를 했을 뿐 토론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아니, 그리고 64항을 만드셨으면 의사일정에도 좀 올려 주시고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진우 위원 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왜 늘리겠다는 건지……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증원을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변경

의 건이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아니지.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토론도 안 했는데 무슨 토론 종결이에요?

○신동욱 위원 토론을 왜 종결을 해요?

○위원장 추미애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안건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주진우 위원 소위를 왜 늘리는 건데요?

○조배숙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토론 없었어요.

○신동욱 위원 이 안건의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모르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본인들끼리 떠드느라고 모르는 거지요. 잘 들으세요.

○주진우 위원 소위를 왜 늘리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모르시지요, 이것 왜 늘리는지?

○박은정 위원 아까 설명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셨다고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박준태 위원 지금 처음 들었어요.

○신동욱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성윤 위원 먼저 말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토론합시다, 이제. 이제 토론해야지.

○주진우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성윤 위원 아까 했어요, 아까.

○주진우 위원 아니, 이유가 뭐냐고요.

○박준태 위원 정당별로 몇 명씩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이성윤 위원 했습니다, 말씀했어요.

○**박준태 위원**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소위를 늘리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 뭐 듣기평가합니까?

○**박은정 위원** 위원회 구성은 회의에서 하는 거지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왜 늘리냐고요. 왜 하냐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성윤 위원** 여기 써 놨어요.

○**위원장 추미애** 이것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그렇게 고함지르시느라고 안 들으신 거예요.

○**박준태 위원** 아니,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자료가 없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회의 방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그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신동욱 위원**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위원장 추미애** 토론 기회를 다 드렸는데 영뚱한 말씀 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언제 토론 기회 주셨어요, 한마디도 못 했는데?

○**박준태 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아니, 자료가 민주당 위원님들 책상에만 있다고요, 지금.

○**주진우 위원** 왜 늘리는 거예요, 왜?

○**곽규택 위원** 여야 간에 한 명씩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건에 대해서?

○**박은정 위원** 송석준 위원님이 영뚱 소리 하셨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아까 송석준 위원님과 장경태 위원님에게 기회를 다 드렸어요.

○**조배숙 위원**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저희 책상에는 자료가 없다니까요, 저기만 있고.

○**박준태 위원** 아니,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요.

○**이성윤 위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11명으로 적어 놓았지 않습니까? 발표했어요, 다.

○**조배숙 위원** 아니, 우리 자료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박준태 위원** 내용을 알려 주고 해야지.

○**신동욱 위원** 자료가 없어요, 우리는. 자료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추미애** 제가 지금 안내말씀으로 갈음한 겁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저기 있는 자료가 왜 여기는 없냐고요?

○**주진우 위원** 왜 그쪽만 주고 우리는 안 줘요?

○**신동욱 위원** 저기 있는 자료가 여기 없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박은정 위원**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제가 자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메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왜 늘리는지 알기나 압시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자료도 안 보시고 그냥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잘 들으세요.

구체적 선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존의 명단이고요. 이것을 추가 변경하는 것을 제가 아까 안내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왜 늘리냐고요?

○주진우 위원 왜 늘리는지 알려는 주고 안건을 올려야지. 이유라도 알려 주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늘리는 내용을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안 했어요.

○조배숙 위원 협의가 안 됐어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 간사랑 이야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간사하고 안 했어요.

○신동욱 위원 협의가 안 됐다니까요.

○조배숙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간사하고 했는데 왜 안건이 안 올라와요? 그것은 진작 올라와야지.

○서영교 위원 아니, 그쪽 간사한테 얘기를 하세요.

○조배숙 위원 무슨 소리야, 협의가 안 됐는데?

○곽규택 위원 지금 안건에 없는 걸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안건에 없는 것을?

○이성윤 위원 분명히 11명으로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안건에 없는 것 끼워 넣어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신동욱 위원 왜 늘리냐고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태 위원 정회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뭘 표결하신 거예요, 지금? 뭘 표결하신 거냐고요.

○박준태 위원 아니, 회의를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하시지요. 이게 뭐니까, 이게?

○서영교 위원 아니, 여지껏 알아 놓고 뭘 모른 척을 하고 그래?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 혼자 회의하세요, 혼자.

○**신동욱 위원** 모르겠어, 뭘 표결했는지 모르겠어.
(일부 위원 퇴장)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시24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정무위 소관 4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금융위, 국가보훈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인가 요건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법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우자의 의미를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려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권오을 장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모처럼 법사위에 와서 위원님들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국가보훈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보상이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예우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권오을 장관님, 늦었지만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간호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신 분들인데 ‘전·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 정도가 1·2급인 자’ 이렇게 해서 간호수당을 받는 분들이 1·2급인 분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상이 1등급의 경우 상시 지급하는 간호수당이 월 321만 4000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거의 독자적으로는 생리현상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어서—1급이니까요—그래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고, 그런데 실제 24시간 간병에 필요한 비용이 현행 간호수당 삼백여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주야로 최소 두 사람의 간병인과 휴일대체 간병인을 고용하는 한 달 비용은 대략 5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항상 케어하던, 간병하는 간병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하게 된다든가 하면 그 대체인력을 상이 유공자가 직접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거동도 불편한 분인데. 그래서 이게 현금 지급만으로는 해결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지급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 나눠 보시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 점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기표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해서 간호사가 간병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옮겨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병상 수도 800병상에서 내년도에는 1000병상, 2년 후에는 한 1200병상 그런 방식으로 옮겨 가게 되

면 간호와 간병을 같이하면서 그 비용을 조금……

○**김기표 위원** 아닙니다.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상이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돼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이 1266명, 2등급이 1089명이고 아까 얘기했던 게 1등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하고 전체적인 실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가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3~7등급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좀 없다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이건 주무 부서가 그런데.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이 1·2등급이 받는 간호수당이 일반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의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금과 비교할 때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적다는 거고. 그래서 간호수당의 향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상이 국가유공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병인 연계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보훈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면 1·2등급 분들도 선택에 따라서, ‘돈이 적습니까?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이·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은 사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단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리현상 해결하는 것도 주 3일에 한정돼 있는 면도 있고 해서……

어찌 됐든 지금 결국 돈 문제인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분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분들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사실은 국가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제가 적극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인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준다 이런 내용의 법인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 이미 미망인으로 돼 있는 분들입니다. 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당이 승계되는 그 법안은 아직 입법이 안 되었고, 곧 제출해 가지고…… 심의 중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현재 혼자 계신 미망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

다.

○서영교 위원 현재 혼자 계신 미망인들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얼마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현재는 월 1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나이는 80세 이상 그다음에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그렇게 돼 있고 숫자는 한 1만 6700명 정도 됩니다.

○서영교 위원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다른 분들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아마 1~2년 내 계속 나이를 75세, 70세……

○서영교 위원 보훈부장관님, 10만 원이잖아요.

제가 2012년부터 계속 대표발의해 오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그때 와서 저에게 요청한 법안인데요 그때로부터 한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94살, 95살, 96살,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분들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 받고 있지요, 지금?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월 45만 원 받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정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떠나시면 같이 살고 있는 미망인이 가장 걱정된다는 겁니다, 월 45만 원.

그런데 제가 올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원에 갔는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영웅이 떠나도 그 유족에게 그 영웅에게 대우했던 최소한의 예우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동했는데 제가 그 법안을 아주 일찌감치 대표발의했고 22대 국회에 와서는 지난해 8월 1일 날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사위에 있으니까 통과된 것을 보니까 생계지원금 10만 원 이걸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저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6·25 참전할 때 20대예요. 그때 부인들은 몇 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계신 분들이 떠나면 최소한 받던 명예수당 정도는, 45만 원 정도는 그 배우자에게, 미망인에게 가야 한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법인데 그것은 그냥 놓고 최소한의 생계수당 이것 정말 얼마 되겠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날 얼마 안 남았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우자한테 승계되는 법이 지금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제가 법을 내놨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그래서 이제 정무위에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승계를 했을 때 70% 하게 되면 예산이 75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은 그 법을 만드는 게……

○서영교 위원 아니,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할머니,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그 입법이 목표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그 입법 2012년부터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아주 기

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법은 한 단계 갔지만 이렇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은 그겁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는 누가 치러 줍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돌아가시면 장례를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유족들이…… 제복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돈은요?

오래전부터 받은 비용인데요. 그 정도 예우는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참전명예수당을 미망인에게.

두 번째,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받던 명예수당의 6개월분 정도만 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분 정도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대한민국의 6·25 참전했던 어른들게……

그리고 어제는 제가 고엽제 어른들을 만났는데요. 한 700여 명 뵈었습니다, 고엽제 어른들, 월남 참전용사분들. 월남 참전용사분들은 아직까지는 6·25 참전용사 어른들보다는 그래도 젊으시지만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족과 단체가 치려주더라도 그분이 받던 참전명예수당을 이제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6개월치분 정도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어야…… 우리가 ‘돌아가셨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알고 계셔서 다행이시고 이제 첫발을 떼셨으니…… 이게 정말 오래된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통과시켜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저희 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권오을 장관,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같이했지요? 저도 보훈가족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희 선친도 6·25 2년 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자유당 백낙준 문교부장관이 명예졸업장을 주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저는 어렸으니까 모르고 자료를 찾으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사에 기록이 돼서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사상적 의심을 많이 받고 심지어 예비군교육장에서 박근혜 때 ‘3대 빨갱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용사 매일 돌아가

십니다. 그 미망인들, 군경, 경찰 또 사실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이런 분들이 전원……

독립유공자 후손은 그래도 보훈부에서 보훈기금이 많아요. 그리고 손자까지 혜택을 주는데 심지어 그분들에게는 배우자한테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제 국가가 보상할 때가 됐다’, 이건 저도 굉장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장관께서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할 것은, 완도를 가면요 전부가 독립유공자예요. 특히 소안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많은데 1920년도에 사립 소학교를 건립해 가지고 여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1920년 저희 할머니, 어머니 세대는 당시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 해서 학교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선각자들이 그 조그마한 섬에서 여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사립 소학교 30%가 여성이에요. 이런 선각자들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가 항일독립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저희 선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된 그러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분들은 기록이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나온 사람들은 유공자로 서훈을 받고 기록이 없고 진짜 민초 그런 독립유공자들은 지금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가셨지만 후손들이라도 조상들의 명예를 위해서 보훈부에서, 특히 권오을 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훈부에서 학자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지방에 가면 구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전으로라도 인정되는 사람들은 보훈부에서 좀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서훈, 추서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안도를 비롯해서 신고 포상에서 발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자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유공자들이 돌아가셔서도 불평등할 것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피아간에 경찰가족도, 무고한 백성들도 낮에는 경찰, 밤에는 인민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한 사람들도 보훈부에서 좀 발굴을 해서 명예 회복을 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꼭 좀 부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을 장관님, 김병환 위원장님, 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1)
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9. 선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농해수위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9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신지식인 육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수산신지식인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연인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신지식인 정의를 규정한 안 제17조의2제1항 중 ‘수산업활동을 하는 자’를 ‘수산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0항 및 제1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및 제1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임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범 차관님, 임명되시고 처음 법사위에 출석하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해양수산산업의 발전 또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연안·어촌의 발전 또 해운·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류망 확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10항, 11항 및 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범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감사합니다.

16.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1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6시51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제1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관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요만 보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성민 법무실장입니다.

정상현 검찰국장입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입니다.

(인사)

승재현 인권국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해외출장 중이고 차용호 국적·통합단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법무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를 도입하고 기습공탁 차단을 위해 공탁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변화된 현실 반영을 위해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소지·시청죄를 신설하고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의 비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유인물을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4455억 원으로 이 중 114%인 1조 645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조 4279억 원이며 그중 99%인 4조 374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371억 원이며 결산액은 1424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 1조 3249억 원의 114%인 1조 5144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4조 2559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

다음으로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액 1205억 원의 109%인 131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12억 원으로 그중 98%인 1183억 원을 지출하고 2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순서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법제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장 취임 후 위원님들을 찾아뵈었으나 일정상 모든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미리 인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법제처가 체계적인 정부 입법 지원·관리·정비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법제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행정법령 등을 정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처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법제정책국장 김진입니다.

행정법제국장 권태웅입니다.

경제법제국장 안상현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채향석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양미향입니다.

법제조정정책관 윤강욱입니다.

(인사)

김창범 차장은 예결위에 참석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의 서면 보고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없어 4쪽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은 300만 원이며 세출은 442억 90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 300만 원은 과년도 보수 환수 등에 따른 정수결정액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쪽, 2024년 예산현액은 454억 1800만 원으로 그중 97.5%인 44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총 11억 2800만 원입니다.

7쪽, 예산의 이월, 추경, 예비비는 없으며 인건비 부족에 따라 보수 및 기타직보수로 전용한 2억 3600만 원 등 총 전용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된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변동사유 등은 결산 개요 9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4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억 4500만 원 대비 103.6%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07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73억 3500만 원 대비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 세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6억 5900만 원으로 물건비 3억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3억 2600만 원을 계약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9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18억 8900만 원과 기타 예산 절감 등에 따른 20억 7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9억 5900만 원으로 대표적으로 무기계약직 퇴직 직원 증가 등으로 인해 기본경비 중 고용부담금이 부족해서 인건비의 보수에서 94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목표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이후의 2024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시간 관계 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수사기획관직무대리 이대환입니다.

(인사)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수처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공수처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수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세입결산액은 1억 8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2억 74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06억 8000만 원 대비 8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세입 정수결정액은 1억 8100만 원이며 명예퇴직수당 반납분과 직원채용 응시 수수료 등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6억 8000만 원으로 18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8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공사비, 정책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이용은 없으며 전용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4쪽 이후부터 재무제표 요약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나오셔서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지원실장 이형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인사)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 8000만 원이었으며 관사 임차보증금 6억 원, 연가보상비 반납액 등 4900만 원, 채용 응시료 6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2500만 원이 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7억 6600만 원으로 그중 54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4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544억 1800만 원은 인건비 322억 200만 원, 기본경비 71억 900만 원, 주요사업비 151억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과 재무결산 현황의 보고는 제출한 결산 개요 6쪽 이하의 내용으로 간략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현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법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법부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달게 받아 차후 예산 편성·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4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250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2조 4791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0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46억 원으로 이 중 4886억 원을 수납했고 6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83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13억 원으로 이 중 2650억 원을 수납하고 16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64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2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조 8818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8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차년도 이월액은 148억 원, 불용액은 8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3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5억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현액은 3856억 원이고 지출액은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고 차년도 이월액은 24억 원, 불용액은 133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2313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01억 원으로 그중 1783억 원을 수납하고 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액은 2313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9억 원을 합산한 지출계획현액은 2342억 원이고 지출액은 1783억 원, 이월액은 25억 원, 불용액은 2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결산 개요 8쪽 이하로 간략화하겠습니다.

사법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6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검토보고 요약본과 총괄본 2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4년도 결산입니다.

아울러 총괄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결산 개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기준 2024년도 예산현액은 법무부 4조 3066억 원, 대법원 1조 8818억 원 등 6개 기관 총 6조 4586억 원 중 98.7%인 6조 37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법무부 교도작업특별회계,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 기준 2024년 예산현액은 5068억 원이며 이 중 72.7%인 36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법무부의 범피기금, 대법원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 기준 2024년도 계획현액은 3684억 원이었으며 이 중 87.1%인 320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관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 소관은 56개 사업 7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총괄에서는 먼저 기재부 집행지침과는 다르게 연구용역비가 적절한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에 일반용역비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는바 모든 사업들의 비목 적합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예산을 적합 비목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은 최근 2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 지침에 따른 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형사보상 및 34번 검찰청 운영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을 과다편성 후 이를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이전용하는 재원도 매년 확대 집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입니다.

시설보완 사업은 교도작업 정역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작업장 신축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의 원스톱솔루션센터 사업은 사업 실적,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성과관리, 유관기관 간 연계 등 사업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입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9개 사업 15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경우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사업은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전용이 부적정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법령정보제공 사업에서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료의 집행 시기를 적정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고, 자문료 지급의 근거 법규도 마련하고,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감사원 소관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7개 사업 1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경우 기본경비 사업 관련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뢰성을 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입니다.

공수처는 총 4개 사업, 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는 연구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경우 서면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9개 사업, 14건에 대한 세부적 검토 내용입니다.

인건비 사업의 불용률 4%는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 1.2%와 비교할 때 좀 과도한 면이 있고 2023년도 불용률 2.7%에 비해서도 높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 충원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서 실제 소요인력이 반영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 끝으로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총 24개 사업, 3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괄적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전반에서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이전용 등 예산 변경을 하여서 집행하는 관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인건비 전용을 통해서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원회수금을 반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의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김용민 위원 협의는 했지만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18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65항, 66항, 67항 및 68항에 추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19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 까지 및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8)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0)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2)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2)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3)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5)
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7)
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1)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6)
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4)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2)
3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3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3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3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4)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2)
3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2)
3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3)
3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1)
4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3)
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9)

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9)
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5)
4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97)
4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9)
4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1)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5)
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4)
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2)
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3)
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4)
5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3)
5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3)
5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2)
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0)
5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7)
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1)
5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5)
5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3)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3)
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6)
6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1)
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9)
6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6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6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6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63항까지,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5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검사가 퇴직 후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검사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주민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으로 찬성하는 의견과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퇴직 검사의 출마 제한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간 비례관계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에 그칠 수 있는 항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은 전세사기의 임대인이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는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내란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바 무기징역·금고 선고 시에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절대적 종신형에 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특수상해죄 등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의미에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내용인바 이로 인해 특수상해, 폭행죄 등의 처벌 대상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의 행위 태양으로 ‘공표’ 외에도 ‘유포 및 누설’을 추가하는 한편 법원이 명령한 피의사실공표금지를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유포나 누설이 추가할 실익이 있는 독자적 개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공소장일본주의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있는 공소장일본주의를 그대로 법률화할 경우에 제거할 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7항은 추미애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일부개정안으로서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압수수색 시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승낙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내란·외환죄 등의 경우 국가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오히려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비밀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대상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필요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 기억정보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등 현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기간을 정하거나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하는 등’이라는 표현이 어느 범위의 방법까지 허용되는지 불확실하여 법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은 앞에서 보고한 피의사실공표죄와 연관된 법안으로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6항까지 및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본래의 목적 달성과 국민참여재판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성윤·서영교·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수를 각각 확대하고 기본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

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5항, 제66항, 제68항까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 특검법 모두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로 연장하며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숫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며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한 형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등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자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정사기범죄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범행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규율 대상이 광범위해진다는 점을 심사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행위 금지 대상을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와 동일하게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친족 및 자회사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 금지와 사업기회유용행위 금지는 규율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및 제43항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의 반포,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형벌 체계상 균형성 유지를 위해 유사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 등이 현장출동 등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징계상 책임을 면제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책 대상 직무행위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에 관한 논의는 심사 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3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조사관이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조정 전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친권자 지정 등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한 조사 및 당사자의 분리 조사 요청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의 확인을 명시하여 해당 전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 등으로 지정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50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로 생부임을 입증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로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의학기술의 발달로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생부에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혈연관계에 부합하게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 기존 가족구성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생부에게 과학적 검사명령 등을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문서제

출명령의 대상을 ‘문서’에서 ‘문서 등 자료’로 넓히고 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간접점유를 포함한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공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제출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문서 등의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재판절차를 정비하고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죄를 도입하며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을 즉시하고에서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제출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 제344조제1항에서 자료제출의무의 대상을 공문서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개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을 교정·보완할 필요성과 이에 따른 행정청의 부담 및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 확대하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 증액청구의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의 사인 간 소액 대차에 대해 연 20%인 최고이자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차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금전대차에 대해 이자율 상한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최근 청소년 등이 SNS상 광고를 보면 물품·티켓 구입, 게임비 마련,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빌린 후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소액 대차를 이용하는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되어 이러한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증인의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어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의 강화를 통해 출석을 담보하여 헌법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고유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토론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7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두희 국방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희망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하시는군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7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공수처 위원회 개최 예산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 미만이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은 각 32%, 29.5%,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뜻일까요? 왜 주는 예산도 하나도 사용을 못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회가 지금 개편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신속하게 예산 집행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2025년도에 검사들 정원을 못 채우고 아래 가지고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는 등 그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 예산 집행률이 80% 미만, 포상금 집행률이 0%, 이것은 본업인 수사 업무도 제대로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검토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 집행이 없었고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더 성실하게 업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으면 여기에 제보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부분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박균택 위원** 처장님 부임한 지 1년 2개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조금 넘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1년 2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신속하게 나름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지금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건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성의껏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몇 건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헷갈려 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6개월간 처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건 통계와 상관없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위원님께서 기소한 것 중심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상반기에 기소 건이 2건 있고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상대로 한 표적감사 과정,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직권남용 비리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저질렀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것으로 인한 직무유기, 최상목 씨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 경제비서관 당시에 대기업에게 480억을 뜯어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금 사건은 뇌물죄로 바로 의율이 가능할 텐데 그런 사건들은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 지금 대부분 제가 챙기고 있고……

○박균택 위원 아니, 챙기는 것 말고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 잠깐만요. 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교과서만 읽어도 답이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직권남용 사건은 그전에 고발장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수많은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정문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건이 지금도 활발히 수사 중이고 검토 중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감사원 사건, 지금 수사진이 재편되면서 제가 새로운 수사진에게 수사를 독려하고 또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내가 보기에는 결정문만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오랜 세월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속히 또 나머지 남은 부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저는 공수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도 이런 답답증, 울화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인원 타령만 합니까? 인원 없이 결정문만 써도 되는 그런 사건을 처리를 안 하면서 왜 수사대상을 넓혀 달라, 기소 범위를 넓혀 달라, 인원을 늘려 달라 이 얘기만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최근에 수사진이 진용을 갖추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답답해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시간이 남았는데 더 질의 안 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한 것 여러분 보셨지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얹지를 부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숙청 이런 이야기도 올리고. 누군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넣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확신해서 올리지 못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한지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바로 오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좋은 날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걱정했던 걸 해결해 오고. 아니,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해 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국민이 낸 세금에는 이자 돌려 보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하는 사람이 저는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우리는 이 법사위에서 참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됐고 윤석열 부인도 구속됐고 심우정은 압수수색 당하고 박성재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의롭게 써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귀연 판사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해 주셔야 합니다. 지귀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조희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었는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었는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 구속취소에 대해서 꼭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희대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국민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에게 언제나 다시 심판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법원이 자기 중심을 잘 지켜 주길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마도 기억

하시겠지만 12·3 일이 생겼을 때 직후에 법사위에 나와서 그것이 헌법에 반하는 통수권 행사라는 취지로 대법원의 뜻을 밝혔고 그 뒤에도 계속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제 입장 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저희 대법원, 사법부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같이 간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분명히 하고 실천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풀어 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가서 회의하시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건진법사 전성배 집에 1억 6500만 원이 발견되었고 5000만 원 관봉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그런데 그 5000만 원 관봉권을 검찰이 압수해서 떠지를 다 끓여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검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언론보도로 받은, 보고를 받은 직후에 법무부의 간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사건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려고 했지만 법무부의 감찰관과 담당관이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대검에 즉시 감찰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니까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들을 주지시켰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건희와 아주 가까운 전성배 건진의 집에 1억 6500만 원이 있었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것처럼 거기에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저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가.....

○서영교 위원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저것은 검찰에 가서 떠지가 없어진 거예요. 떠지를 없앴는데 하위 직급의 직원이 떠지를 없애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검사가 지시한 거지요. 위에 있는 검사가 지시했고 그리고 남부지검 지검장이 묻은 것 아닙니까? 남부지검 지검장의 이름은 뭡니까, 당시 지검장 이름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신.....

○서영교 위원 신용석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신용석,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외칩니다. 남부지검 지검장이었던 신용석, 김건희와 전성배 건진 관련한 것을 어떻게 조작하고 은폐하고 숨기고 검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김충식 수첩 띄워 주십시오.

김충식이 누구입니까? 최은순의 동거남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동거남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김충식 수첩에 ‘손 목사(세계로교회)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 배방읍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님? 아산 배방읍 부동산이거든요.

1분만 더 못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피 묻은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목에 칼이 찔렸을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가 왕창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ABCD 현장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제가 당시에 경찰서장을 불렀습니다. ‘왜 물청소를 하느냐?’,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철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칼을 찔렸던…… 칼 사진도 보여 주십시오. 저 사람 김진성, 저 칼입니다, 저렇게 날카롭게 깎은 저 칼. 김진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던 부동산이 아산 배방읍이고 아산 배방읍의 일등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23년 김충식의 노트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가 사람을 찾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진위는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지만 적극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해 요청합니다. 김충식이라고 하는 최은순의 동거남, 이 사람의 수첩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 쓰여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칼로 난도질했던 자의 이름 김진성은 아산 배방읍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뒤에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도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도 검찰과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대표해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국정농단·수사외압 세력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해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법정의 구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범죄 정황과 의혹들이 그야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힘과 내란 세력들의 특검 수사 방해로 수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특검 수사 진행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확대, 수사기간의 연장, 수사대상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의 특징상 자수나 자백을 할 때 형의 감면을 해서 실제로 그런 숨어 있는 공범들이나 또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그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서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법정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서 입법 미비를 보완해서 철저한 특검 수사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죄자들 단죄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책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 기관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그리고 사법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민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가지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법무부랑 사법부가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또 법무부는 내란 세력들과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수사 또 기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 치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거부를 하고 이를 만 발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사 게이트에 관해서도 특검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특검

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가장 최후의 보루는 저는 사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기간을 법원이 대폭 줄인 것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발본색원하는 일차적인, 최후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처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질서 유지·수호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근본 가치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법부도 초기부터 입장은 같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헌법질서 중에서 사법부 독립,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별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법관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우리 정의에 맞게 구현되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대부분 사법부의 판사들께서 이렇게 내란 종식이나 사법정의 구현을 하는 데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판사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도 이런 사법부의 헌정질서 구현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판사들도 여기에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노력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오늘 국회에서 위증한 위증 범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고발되고 조사돼야 됩니다.

○전현희 위원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당연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국회 증·감법에도 보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위증인지 허위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추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증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해명의 경우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그것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증인들이 ‘격노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수사지휘나 기록 회수에 관여했느냐?’ 질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실이 그 당사자들의 자백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의해서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민 1분 더 드리세요.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허위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 그것을 의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선서 후에 위증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현희 위원 법무부장관인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내란 다음 날에 안가에서 회동한 것이 ‘연말의 친목 모임이다’ 그리고 ‘내란에 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전현희 위원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는 누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끝까지 단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7분입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귀연 부장 윤리감찰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네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윤리감사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어떤 소명이 좀,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워낙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귀연 부장 쪽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어떤 명확한 증명이나 소명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

럼……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지귀연 부장이 특별한 협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잠정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사실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일 것 같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귀연 부장 본인이 그 사진 찍힌 룸살롱에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사진을 왜 찍었냐?’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갔다가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그 당시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둘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감사실에서 조사가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보고가 있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윤리감사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종합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여러 가지 정황상 제공된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볼 때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볼 텐데 만약에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미진하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감당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장님, 지금 법원행정처장께서 공수처에 그 부분을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 중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 수사 중입니다. 다만 행정처에 감찰 자료를,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받지를 못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김기표 위원** 행정처장님, 왜 감사 자료 안 줍니까? 공수처에 왜 감사 자료 안 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먼저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감사실의 감사 자료는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되기 전에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김기표 위원** 공수처장님, 그것 왜 압수수색영장 안 받습니까, 감사 자료 안 주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등 포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기표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것 맞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에 미제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아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김기표 위원** 간단히 좀 숫자만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올 상반기에 처리된, 7월 31일까지 처리된……

○**김기표 위원** 아니, 처리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는 관심사가 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미제. 현재 미제가 몇 건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상반기에 1236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933건……

○**김기표 위원** 공수처에 지금 남아 있는 검사가 몇 명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김기표 위원** 4명이 결원돼서, 몇 명이 남아 있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하는 인력, 검사가 몇 명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처·차장 빼고 19명입니다.

○**김기표 위원** 19명이면 지금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는데요, 19명 정도면? 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전혀 없어 보이지요, 압수수색영장도 안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기표 위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라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자료, 제가 지금……

○**김기표 위원** 지금 서로 평통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공수처는 지금 하세월로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결론이 나야 지금 재판에서 배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기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서로 평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언제 수사를 결정 낼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처럼 그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 초입부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짐작컨대 수사된 것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 자료조차 안 받았잖아요. 처음 수사 초기면 감사 자료부터 받고 그 자료 검토하고 거기서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게 수사의 ABC인데 그것도 안 받았으면 무슨 수사가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맨날 수사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고 공수처에 가면 사건은 처박혀 버리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검사가 19명이나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귀연 판사 아까 얘기했는데 두 기관에서 평통하듯이 그렇게 하면 도대체 국민한테 결론은 언제 내놓을 겁니까?

공수처, 정신 차리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관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남부지검에서 관봉 떠지가 유실됐잖아요. 사실은 현금으로 오가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는데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나 시간,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번호 이런 게 다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밝혀지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관봉 떠지가 없어졌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감찰도 안 받고 넘어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른바 특수한 검사들은 현 돈 떠지 같은 것, 그것 막도장 가지고도 추적해 가지고 어디서 인출됐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데 관봉권처럼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명하셨는데 감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수사하고도 연결시켜서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절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정말 철저하게 감찰하고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전현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기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서 감사원 사건 수사 중에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 벌써 2년이 넘어갔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이번에 조직이 재편되면서 수사진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검토가 필요……

○이성윤 위원 언제 마칠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나름대로 그 부분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빨리 끝내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까 김기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귀연 재판부 수사 중인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이것도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도 지금 열심히 챙기고 또 수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고 있어 가지고 그 수사를 검찰은 안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밖에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않고 있으면 국민들은 표적감사 수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만 있어요. 공수처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신속히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행정처장님, 지귀연 재판부 말씀입니다. 사건 배당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연 이후로는 신건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올해 1월부터 구속 사건 배당 안 하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2월 3일부터는 일체 불구속 사건 재판을 않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요 그 이유가 내란 사건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배당을 않고 있는 것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에 있는 사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33건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재배당됐고 나머지는 전담이라 해 가지고 사건이 좀 있는데 사건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사건 재판하는 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단 말씀하신 내란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 배당에 있어서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지금 33건 중에서 7건은 재배당, 나머지 26건 남았는데…… 내란 사건이 7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보건 전담 사건 5건, 관련 사건 19건, 사건 처리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내란 재판을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내란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어쨌든 그 재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 사건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

○**이성윤 위원** 아니, 어떻게 연말까지 수사를, 재판을 끝냅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그 사건을 재판할 당시에 재판부에 100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홉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해 가지고 109번의 재판을 열었고요. 휴정기에도 무려 8번을 했고 연말에도 6번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쉴 것 다 쉬고 휴정기 쉬고……

지금 재판 총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사건 재판을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휴정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계속해서 그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말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 연 날짜를? 지금 몇 번 안 열었어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마칠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 재판부…… 저는 재판부에 과연 신건 배당을 많이 하나 또는 구속 사건을 배당해서 그런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배당이 안 되고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요.

연말까지 끝낸다고요? 이렇게 가 가지고는…… 지금 중인이 몇 명인데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 속옷만 입고 배 째라 식으로 구치소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요?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도 출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강제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 안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강제인치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특검에서 교도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이성윤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러 갔고요. 불출석하니까 강제인치를 요청했는데 지귀연 재판부에서 구치소의 교도관 의견만 듣고 그냥 궐석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규칙 126조의5를 보면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가서 윤석열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보시고 궐석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셔야지 구치소의 보고서만 보고 불출석 결정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재판부에서는 불출석의 책임은 피고인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불출석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것 정말 중대한 재판이에요. 윤석열이 재판정에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고, 지난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무려 5번이나 비공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재판부를 무지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강제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도 강제구인도 안 하고 또 불출석해도 놔두고 또 규칙상 수명법관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특별재판부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전현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취임 2월부터 말이지요 열 달 치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12월 3일하고 4일만, 이를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특별재판부 만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내란 사건, 반역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법적·행정적인 조치를 다시 취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호헌의식, 헌법질서에 대한 수호의식 이런 부분은 저희 법관들 다 공유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원래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인 측면도 많은데 피고인 스스로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재판부로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정해진 기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처장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예.

○**이성윤 위원** 윤석열이 본인 책임이라 하더라도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가 안 나오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재판하는 게 맞습니다, 불이익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명법관이 가서 윤석열 상태를 확인해 보고, 도대체 왜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불출석할 만하다 납득이 되면 그래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구치소 의견만 딱 받고 이것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비공개하고 합쳐져서, 그리고 옛가락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과 한통속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고 아무리 피고인이 자기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법원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체 법관들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이십니다.

○**장경태 위원** 이홍연 교정단장님, 앞으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결산심사할 생각입니다.

작년의 결산심사 과정과 기준하고 올해하고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정단장님, 지금 교정본부장직무대행 맡고 계시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법사위원과 당 특위 차원에서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1·2차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동안 이 간단한 자료, 한 두세 장짜리 자료도 교정본부에서 안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죄송합니다.

○**장경태 위원** 1차 방문 당시에…… 아니, 1차 때 마이크와 책상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정말 급급하게 급조해서라도 2차에 설치했으면 모를까 1차에서 설치했다가 2차에서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무시하는 건가요, 국회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준비가 소홀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아니요, 소홀한 게 아니고요. 1차에 소홀했다가 저희가 지적해서 2

차에 준비했으면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는데요 이미 1차에 준비했던 것을 2차에 다 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아마 실무자께서 협의 과정에서……

○장경태 위원 서울구치소장이 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협의 과정……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4일 전에 이미 방문계획, 실시계획 다 보냈고요. 처음 가서 당황해서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준비 잘했다가 2차에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향장비하고 시설 설치한 것들, 구축 경비 확인을 했는데 1차 때 399만 8000원 예산 신청하셨어요. 그렇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바로 1차 집행을 하셨는데 2차에는 예산 신청도 안 했고요. 그런데 1차 때 신청한 내역 중에 업체명과 마이크 종류, 스피커 종류 이것 저희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 안 하세요, 왜? 안하신 이유가 뭐지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오늘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아니요, 안 하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것 자료요구 목록, 답변 목록 가져왔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오늘 오전에 아마……

○장경태 위원 해 주시고요.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도 다 내고 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구즈넥 마이크라고 12대, 스피커 2대 등등 부가세 포함해서 한 60만~70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375만 원 예산 집행하셨거든요.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가 차를 사고 이런 것 다 굳이 깐깐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육칠십만 원 정도 집행하면 가능한 예산을 370만 원이나 신청해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총무과장은 비롯한 이분들 감찰을 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분명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특활비·특경비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역, 일자뿐만 아니라 특활비에 대해서 최소한 누가 수령했는지 좀 알려 달라…… 어차피 특활비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산은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급되는 대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도 실명 혹은 해당 지청까지는 모르더라도 정기분·수시분 나눠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지청 그리고 해당 어떤 소속 검사들이 받는지에 대한 요청을 제가 했고요. 수시분도 총장 재량으로 어떤 수사검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됐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A, B, C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저희가 총액을 계산이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A, B, C로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심사가 어렵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A, B, C, D, E, F, G 죽 해서 도대체 어떤 검사가 상위 톱 10인지 궁금하고요.

특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과 일자를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특경비 사용 시간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몇 명이 사용했는지 공개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환수한 사례 제출해 달라니까 또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가 9월 초에 법무부 결산심사 있는데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가 2차 추경 당시에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특활비 40억, 특경비 507 억 다 부활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하면 저는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장관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감사원장님, 특활비·특경비 대법원 판결 난 것 아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비공개 자료 일부 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요……

○**장경태 위원** 법원에서마저도 감사원의 어떤…… 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 났습니다. 예산내역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했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이 무슨 기밀감사를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 출장비 부분도 포함돼 있고 해서 그걸 소명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개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왜 감사원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경비 사용내역은 제출 안 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특경비요?

○**장경태 위원** 예.

○**감사원장 최재해** 특경비는 지난번에 문서검증 오셨을 때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원 기조실장님, 잠깐 저기 가서 서 주세요.

감사원장님 SAI20 회의 가셨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것 기재부로부터 반려된 예산 아니에요,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전용하셔서 감사활동경비에서 지출하셔서 해외 회의 참석하신 거예요. 그것 징계 사유인 것 아시지요? 국가재정법 위반인 것 아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 예산은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감사활동경비 7000만 원을 전용해서

채워 넣으신 것 아니에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 전용은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 주신 SAI20 출장은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물론……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장회의 예산 7800만 원을 회의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 감사원장회의 예산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경비에서 또 채워 넣으셨고, 그것 아니에요? 이전용하셨잖아요, 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외……

○장경태 위원 왜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보는지 이유는 아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유 아시지요? 감사원 예산집행심의회, 감사원 기조실장님이 위원장이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께서 결정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도 참석 안 하시고 기재부차관한테 대리하듯이 하셨어요? 선임 국장에게 대리하셨……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께서 직접 의결하셨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속기록 있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 의결서하고 그 서류가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어떤 사유로 이전용하셨어요? 이것 기재부에서 반려된 예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회의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 저희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국격이 훼손돼서 쓰셨다 했어요. 국가재정법을 어기면서 국격을 훼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국격을 훼손하는 거지요. 기재부에서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새롭게 신설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비목 자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감사원에서.

법제처장, 법무부장관님, 법원행정처장님 외국 회의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예산편성해서 갔지요.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감사원장, 사무총장님까지 해서, 최달영 총장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회의 예산 필요하다 해서 다 편성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국제회의라는 것이,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게 제 기억으로 2024년 9월인가 10월인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한 시기가 2023년 5월입니다.

○장경태 위원 놓치셨잖아요. 일정을 놓치셔서 예산이 없었어요. 없는데 왜 이전용해서 가셨냐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러니까 국제회의라는 것이 그 시기에 미리 계획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비목이 다르잖아요. 감사원장회의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을 쓰셔 가지고……

그러면 저 징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제가 별도로 저희가 좀 불가피했던 점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게 국격을 훼손하는 거라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이전용해서 비목도 없는 예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갖다 써 놓고 안 가는 게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 답변 동의하십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국제기구와의 어떤…… G20 소속국 감사원장들의 회의인데요 그 회의기구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국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아니, 기재부가 예산 삭감한 게 가지 말라고 한 건데 왜 가셨냐고요. 왜 말을 돌려서 하세요. 지금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가시면 안 되는데 예산을 이전용해서 가셨다고요. 그건 심의회 위원장이 기조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감사원장이 지시했던 사무총장이 지시했다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기조실장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감사원장 보고 해외 회의 나가라고 한 겁니까? 기조실장님이 지시하셨어요, 감사원장한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국제……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감사원장이 꼭 이것 가야겠다라고 지시하셨다든지 최달영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님 이것 꼭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본인 판단으로 하신 것 아니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제기구인데요, 저희가 그 기구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회의 일정이 대략 잡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은 물론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1년 이상, 이후인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시기별로 계획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장경태 위원 기조실장이 보고하셨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그것은 계획을 보고드려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은정 위원님입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현재 영장은 아마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집행이 안 되면 당연히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피의자가 사망했다거나

나 아니면 완전히 도망을 가서 소재가 불명되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불능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행정처장님의 생각하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들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만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멀쩡히 지금 어딘가에 있는, 소재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을 집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쨌든 법원의 권한, 사법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이 지금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대한민국의 국민들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은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협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협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살살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옮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는 왜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것 합

하면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 축하 선물로 김건희에게 나토 장신구 3종 세트를 줬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갑니다.

장관님, 돈을 받고 공직을 팔아넘기면 그것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이 부분도,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도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29일 날 기소할 때 반드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의 공범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뇌물죄로 의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께서 36년 법조인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3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 평균 수입 6년 치의 봉급, 뇌물 2억 5000만 원은 김건희 씨 집권 1년 만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뇌물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서 김건희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2호가 뭔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제가 지금……

○**박은정 위원** 코바나컨텐츠 불법후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고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뇌물·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치검찰이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하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지원 위원님이십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원장님, 언제 나가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제 임기요? 금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임기를……

○**박지원 위원** 헌법 위반했잖아요!

지금 감사원, 특검 수사받아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난번에 압수수색은 들어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렇게 망친 거예요. 나라를 망친 거예요. 우리가 관저 21그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현대건설 아니냐?’, 다 거짓말했잖아요.

수사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난번에 압수수색은 들어왔습니다.

○**박지원 위원** 기다리세요. 다 받을 거예요.

유병호 감사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 근무하고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지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근무 잘하니까?

최달영 사무총장은 퇴직했다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퇴직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왜 감사위원 승진 안 시켰어요? 유병호, 최달영 이 두 사람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망치고 감사원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거예요.

제가 ‘국사찰’ 그 문제를 제기했지요. 기억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지원 위원 국사찰이 뭐예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저도 지금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엉터리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처음 보고서에는 ‘박지원 원장이 SI 첨보를 삭제지시했다’, 그다음 보고서에는 그 삭제 지시가 없어요. 감사원도 없는데, 보도자료에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해서 저는 지금 3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장관님,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다고 하면 무죄를 받도록 놔둬야 됩니까, 공소취하를 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한 범죄……

○박지원 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기소는 과감하게 공소취소를 해 줘야 사는 거예요. 저희가 3년 반을, 제가 지금도 출국금지가 돼 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만약 잘못된 기소인데 공소취하를 안 해 주면, 1심에서 제가 지구연 판사한테 재판받고 있어요. 무죄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또 검찰은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 죄 없는 사람들이 왜 변호사비를 내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공소취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함으로써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었고 지금 법무부장관 하십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헛갈리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개혁의 주체는 국회예요. 주체 중의 주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당정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헛갈리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럴 의도는 없고요 의견을 좀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제 입장이라든가 법무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개인 입장도 자제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자제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가 혼돈이 와요.

최근 제가 수협중앙회장하고 해남·완도·진도 전복 판매를 하는 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하자 했더니 사방천지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저녁 했다가 큰일 난다, 저녁 을 취소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오늘도 보도했어요.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사건으로 기소 단계 되니까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했고 오늘 보니까 전광훈 목사 거기에도 65억을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거 인지했으면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건 내용은 저희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지원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현재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무마를 위해서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하고 또 전광훈 목사한테 65억을 제공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신세를 지고…… 이분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보도가 있어요. 꼭 좀 쟁겨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과거에 현저히 잘못된 검찰도 청소하세요.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가 하여튼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갖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이십니다.

○김용민 위원 오동운 공수처장님, 작년 내란 직후에 12월 달 법사위였는데 제가……

○박지원 위원 잠깐만요.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중앙회장이 투자한 것은 80억이 아니라 648억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정정해 드리십시오.

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동운 처장님, 작년 12월 달 법사위 회의에서 제가 수사 철저히 하시라고 촉구드리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부터 빨리 구속하라고 촉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기억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당한 거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때 수사를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이 내란의 실체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될 수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인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때 그 당시 위원님께서 참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참 크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엄청난 통찰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새삼 깨닫습니다. 법사위는 제가 공수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공부가 되는 자리입니다.

○**김용민 위원** 하여튼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으실 건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뒤늦게 또 ‘아, 그때 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라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개를 끄덕임)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관봉권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하셨고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주시기는 했는데 빠르게 지시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한계를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은 사건의 본질 자체가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을 여전히 다시 검사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제대로 자정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지금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감찰부장이 대검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다시 감찰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대검에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미 수사 전환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 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자칫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 혹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준 제식구 감싸기의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감찰·수사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돼 갖고 특검에서 요구한다면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지금 통과되기 전이라도요, 관봉권이 견진법사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관봉권의 출처가 지금 봐서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았던 것들이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자체가 수사대상이고 그 돈의 출처와 관련된 수사 증거인멸도 역시 수사대상이라 지금 이미 수사대상이다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얘기 나왔기는 했는데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검, 서울구치소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내란의 밤에 간부회의하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랑도 한 세 번 정도 통화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간부회의에 참석한 자들을 법무부에서 전원 확인했는지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 있었던 직원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운영지원과나 기조실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나

감찰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당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내란에 어떻게 협조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그래도 실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감찰의 일환으로서라도 아니면 진상조사의 방식으로라도. 법무부 내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어떤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협조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한번 심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2월 3일·4일에 걸쳐서 법무부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갖고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문되는 것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 혹시 ‘그레이스’라는 술집 이름 들어 보셨나요, 고급 룸살롱?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언론에서 본 게 그 이름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샤르망’이라고 아십니까? 샤르망도 고급 룸살롱 술집 이름인데 들어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같은 맥락에서 아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같은 맥락에서.

그레이스는 라임 사건의 김봉현…… 모 언론에다가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엮여 있고 자기는 주범이 아니라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바로 그 라임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전에 ‘앞으로 이들이 수사검사가 될 것이다. 잘 접대를 해라’라고 해서 김봉현이, 그 집은 주로 술 한 상의 기본세트 값이 1000만 원인데요. 그런 집에서 이 모 변호사와 이 모 변호사가 소개한 나 모 검사 등을 접대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쪽개기 기소로 유명해진 거지요. 기억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바로 그 업주가 샤르망이라는 고급 룸살롱을 운영했어요.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술을 마신 곳이 어느 곳인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이름은…… 이름 말씀이지요?

○위원장 추미애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금방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바로 그 샤르망입니다. 그런데 샤르망은 바로 그레이스 업주가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이 굉장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른 공직자들이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고 주요 사건을 맡다가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당장 파면되거나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여름에 힘들다고 가다가 우편물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재판의 주요 재판부였어요. 내란 수괴를 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날 구속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룸살롱 접대 의혹, 바로 이 샤르망에서 지귀연이 접대받는 것을 봤다라는 제보 사진이 올라온 제보 일시가 3월 8일이고요.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은 굉장히 수상했던 거지요. 3월 8일 날 제보를 했고 3월 8일 날 구속취소 석방지휘를 하고 판서 복귀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오이밭에서 갓끈을 만지지 말라 했던 것처럼 그런 의혹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란 재판을 하고 있고 내란 수괴는 팬티 바람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을 하고, 여러 차례…… 속에 열,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법 신뢰를 믿겠습니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혹시 신혜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들어 보셨습니까, 이름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름은 들어 봤는데 제가 어느 맥락에서 들어 봤는지를 조금, 금방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주로 기성 언론 조중동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조중동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더라, 그래서 좀 귀를 열어 놓고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귀를 기울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관련 기사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률 관련 기사…… 바로 그 신혜식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 유튜버인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행정관 성삼영으로부터 윤석열 판서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기 위해서 지지자를 모아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과 친하다는 석동현 변호사도 ‘사람을 모아 달라,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더라’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를 응징하러 가자, 테러를 하러 가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서부지법 폭동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를 일깨웠던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 신혜식이라는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서부지법 난동이나 지귀연 판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시면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지귀연 판사는 반드시 조속히 신상 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샤르망 업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 날 서부지법 사태가 생겼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이것이 우리 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파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귀연 부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현재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의 좀 더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중을 강조하시는 그사이에 샤르망 업소는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지귀연은 부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삼겹살 먹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거기가 아니야’ 하는데 현장은 없어져 버렸어요, 신중한 사이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알기로……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 잊혀지고 뭉개지기를,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사법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법치를 누가 존중합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고 안 지키는데 누가 법치를 아끼고 존중하고 수호하자고 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은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중하면 다 놓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함은 깨닫고 현장 확인조사 등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그날은 내란 수괴가 풀려나니까 그 사진을 들고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를 하면서도, 본인도 법원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변호사이다 보니 ‘제발 조용히 좀 내부적으로만 해 주세요’라고 당부를 해서 사실은 그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또 여러 달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이미 그것도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보자는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심에만 무거운 짐을 안겨 놓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더 많이 배우시고 많은 자격을, 높은 자격을 가지시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쪽에서 한 개인에게 심장이 벌컥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계속 방치한다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과 제1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63항까지,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5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기획조정실장 황해식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장직무대행 이홍연

국방부

차관 이두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법원총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총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보고사항】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71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2025. 9. 19.